#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32 발의연월일: 2024. 6. 19.

발 의 자:성일종·김승수·이종배

고동진・송석준・구자근

장동혁 · 송언석 · 서지영

김예지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장기복무 의무장교를 지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유사시 중증 외상 환자 등을 치료할 수 있는 숙련된 의료인이 절대적으로 부족하 여 군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며, 이와 같은 군 의료체계의 붕 괴는 군 전력을 약화시키고 국가안보마저 위태롭게 만들 우려가 있음.

이에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립하여 유능한 군 의무장교를 양성할수 있도록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을 제정함에 따라 국군의무사관학교의 졸업생을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하여 15년간 의무복무하게하고, 그 밖에 현행법상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1호의2 및 제7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등).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

안」(의안번호 제6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제5호 중 "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또는 국군의무사관학교"로 한다.

1의2.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제7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졸업하여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15년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 3의2. 국군의무사관학교의 제4학년생

법률 제20018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제2항제3호의2를 제3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국군의무사관학교의 제4학년생

제12조제1항 단서 중 "제11조제1항제7호의2"를 "제11조제1항제2호의2 에 따라 임용될 사람의 계급은 중위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의2"로 하 고, 같은 조 제2항제4호가목 및 나목 중 "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를 각각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또는 국군의무사관학교"로 한다.

법률 제20018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제2항제4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국군의무사관학교 또는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그 재학기가 중에 외국 장교양성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나. 외국 장교양성학교의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으로서 그 재학기 간 중에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국군의무 사관학교 또는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20018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제2항제3호의3 및 제12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복무의 구분) ① (생 략)	제6조(복무의 구분) ① (현행과
	같음)
② 장기복무 장교는 다음 각	②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으로 한다.	<u>.</u>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1의2.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졸업
	<u>한 사람</u>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단기복무 부사관은 다음 각	⑦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으로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사관학교, <u>육군3사관학교 또</u>	5 <u>육군3사관학교,</u>
는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1년	국군간호사관학교 또는 국군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중퇴한	의무사관학교
사람 또는 사관후보생과정을	
중퇴한 사람으로서 지원에 의	
하여 전형을 거쳐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 장교, 준 사관 및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는 제외 한다)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시·사 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 로 한다.

1.·2. (생 략) <신 설>

3. ~ 7. (생 략) ② ~ ⑥ (생 략)

제11조(장교의 임용) ① 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2. (생 략) <신 설>

- 3. ~ 8. (생략)
- ② 전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장교로 임용할 수 있다.
- 1. ~ 3. (생 략) <신 설>

4. (생 략) 법률 제20018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장교의 임용) ① (생 략)

- ② 전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장교로 임용할 수 있다.
- 1. ~ 3. (생 략) <신 설>

<u>3의2.</u> (생략) 4. (생략)

- 제12조(장교의 초임계급 등) ① 장교의 초임계급은 소위로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임용될 사람의 계급은 전역 당시의 계급으로 한다.
  - ② 제11조제1항제1호·제2호· 제5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용 될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항 제8호에 해당하는 사 람의 초임계급은 중위 이상으

<u>학년생</u>
4. (현행과 같음)
법률 제20018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장교의 임용) ① (현행과
같음)
②
<u></u>
   1. ~ 3. (현행과 같음)
3의2. 국군의무사관학교의 제4
학년생
3의3. (현행 제3호의2와 같음)
4. (현행과 같음)
제12조(장교의 초임계급 등) ① -
제11조제1항제2호의2에
따라 임용될 사람의 계급은 중
위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의2
<u>刊工 可工, 崔L 8 州7至刊2</u>
2

로 할 수 있다.

- 1. ~ 3. (생략)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총 교육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 가. 사관학교, <u>육군3사관학교</u>를 <u>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u>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그 재학기간 중에 외국 장교양성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 나. 외국 장교양성학교의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으로 서 그 재학기간 중에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4의2. ~ 5. (생략)

③ ~ ⑤ (생 략)법률 제20018호 군인사법일부개정법률

제12조(장교의 초임계급 등) ① 제1 (생 략)

② 제11조제1항제1호·제2호·

<u>.</u>
1. ~ 3. (현행과 같음)
4
가 <u>육군3사관학</u>
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또
는 국군의무사관학교
나
0 70N - 1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u>육군3사관학교, 국군</u>
간호사관학교 또는 국군의
<u> 무사관학교</u>
4의2. ~ 5.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법률 제20018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12조(장교의 초임계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5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용 될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항 제8호에 해당하는 사 람의 초임계급은 중위 이상으 로 할 수 있다.

- 1. ~ 3. (생략)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총 교육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 가. <u>사관학교</u>,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또는 국 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그 재 학기간 중에 외국 장교양 성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 은 사람
  - 나. 외국 장교양성학교의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으로 서 그 재학기간 중에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또는 국방점단과학기술사관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
1. ~ 3. (현행과 같음)
4

- 가.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국군의 무사관학교 또는 국방첨단 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 한 사람으로서 그 재학기 간 중에 외국 장교양성학 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 나. 외국 장교양성학교의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으로 서 그 재학기간 중에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 간호사관학교, 국군의무사관학교 또는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4의2. ~ 5. (생략)

③ ~ ⑤ (생 략)

4의2. ~ 5.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